



중국 · 대만 ECFA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지 만 수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팀 팀장 (jmansoo@kiep.go.kr, Tel: 3460-1201)
 이 승 신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팀 부연구위원 (sslee@kiep.go.kr, Tel: 3460-1235)
 여 지 나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팀 전문연구원 (jina7@kiep.go.kr, Tel: 3460-1098)

1. 중 · 대만 ECFA 체결
2. 중 · 대만 ECFA의 주요 내용
3. ECFA가 한국의 對중국 수출에 미칠 영향
4. 시사점



주요 내용

- ▶ 중국과 대만은 2010년 6월 29일 열린 제5차 양안회담에서 중 · 대만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에 서명함.
- ▶ 이번 협상은 추후 협상을 규정하는 '기본협정'이며, 2011년 6월 이전에 본격적인 FTA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함.
 - 기본협정문에 무역 및 투자 자유화, 경제협력, 분쟁해결 등 향후 FTA 협상에서 다루어질 의제가 명시되어 있음.
- ▶ ECFA에서는 양국의 주요 교역 상품 및 관심 서비스 분야에 서 조기수확 프로그램(EHP)을 통한 상호 개방이 이루어짐.
 - 상품 EHP를 통해 중국은 539개, 대만은 267개 품목에 대해 2013년 1월까지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함.
 - 서비스 분야에서도 중국 11개, 대만은 9개 분야에 대해 개방 폭을 확대하였으며, 특히 중국은 대만에 대해 은행 · 증권 및 병원 서비스, 전문 설계 서비스 등을 개방함.
- ▶ 대만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중국의 의도와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확대하려는 대만의 전략이 맞아 떨어진 결과로 해석됨.
- 또한 대만은 이를 향후 각국과 FTA를 체결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하고자 함.
- ▶ 중국의 대만에 대한 조기자유화 539개 품목 중 한국의 대중 수출과 중복되는 품목은 494개로 2009년 대중 수출의 17.9%를 차지함.
 - 그러나 관세유예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일반무역으로 한정하여 살펴보면, 2009년 대중 수출의 7.3%(74.7억 달러)에 해당됨.
- ▶ 494개 품목 중 일반무역액 기준 상위 30개 품목을 분석한 결과 석유화학(12개), 철강(6개), 운송장비(4개) 등에 영향이 집중됨.
 - 중국의 관세율, 일반무역 비중, 대만과의 경쟁 상황을 고려한 품목별 분석이 필요함.
- ▶ 이번 기본협정보다는 향후의 본협상 전개 양상에 더욱 유의할 필요가 있음.
- ▶ 중 · 대만 ECFA를 한 · 중 FTA 추진의 필요성 및 추진 방식을 검토하는 데 있어 적극 참고해야 함.

1. 중·대만 ECFA의 체결

■ 6월 29일 중국과 대만은 해협양안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을 체결하였음.

- 중국 해협양안관계협회(海協會)와 대만 해협교류기금회(台灣海基會) 대표가 중국 충칭(重慶)에서 해협양안경제협력기본협정(《海峡两岸经济合作框架协议》, ECFA: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협정문에 서명함.
- 대만 국민당 마잉주(馬英九) 총통의 집권 이후, 양안관계의 개선에 따라 양국은 2008년 6월, 10년 만에 양안회담을 재개한 바 있음.¹⁾
- 2009년 말까지 4차례에 걸친 양안회담을 통해 경제 이슈에 관한 12개 협정을 체결하였고, 특히 2009년 12월 4차 양안 회담에서 ECFA 협상 개시에 합의함.
- 이후 3차례의 ECFA 실무협상을 거쳐 이번 5차 양안회의에서 이번 협정에 서명한 것임.

표 1. ECFA 추진 경과

경과	구체적인 내용
2009.5. ECFA 논의 개시 합의	대만 국민당 우보송(吳伯雄) 주석의 베이징 방문, 2009년 하반기 ECFA 체결을 본격 논의하기로 합의
2009.11. ECFA 공동연구 완료	ECFA가 양자 경제발전에 유리하다는 결론에 도달
2009.12. 제4차 양안회담	5차 양안회담에서 ECFA에 서명하기로 결정
2010.1.26. 제1차 ECFA 실무협상(북경)	ECFA 정식 명칭 및 기본 구조, 실무 인력구성 상호 통보, 경제무역 관련 규정에 관한 정보 교류 및 논의
2010.3.31. 제2차 ECFA 실무협상(대만)	조기수확(EHP) 리스트 포함 품목과 서비스 부문의 상호 민감 부분에 대한 고려 원칙에 동의 (EHP 리스트에서 중국 농산물 제외, 대만 취약 산업 및 중소기업 보호) 협정 초안에 대한 의견 교환 원산지 규정 분과(小組) 협상 개시 결정
2010.6.13. 제3차 ECFA 실무협상(북경)	협정초안의 내용과 구성에 대한 합의 (무역과 투자, 경제협력, EHP, 기타 등)
2010.6.23~24. 제5차 양안회담 준비 회의(북경)	협정 본문과 5개 부속서 최종 검토, 조정
2010.6.29. 제5차 양안회담(충칭)	양안 간 ECFA 서명

자료: 중국 상무부.

1) 1987년 양안 간 최초의 민간교류가 시작되면서 1990년 11월에 대만의 해협교류기금회(海峽交流基金會)가 설립되고, 1991년 12월에는 중국의 해협양안관계협회(海峽兩岸關係協會)가 설립됨. 두 기구는 명목상 민간기구이나 실질적으로는 대만 행정원 소속의 대륙위원회(大陸委員會)와 중국 국무원 소속의 '대만사무관공실(台灣事務辦公室)'이 주도함.

2. 중·대만 ECFA의 주요 내용

가. ECFA의 특징

■ 추후 본격 협상을 규정하는 '기본협정'의 성격임.

- 이번 ECFA 체결은 FTA의 체결 또는 완결이 아니라, '기본협정'의 체결로서 향후 본협상의 의제와 일정을 규정하는 것임.²⁾
- ECFA 발효 후 6개월 이내에 분야별 확대 협상을 개시하여 조속히 완결할 것을 명문화함.
 - ※ "본협정 발효 후 6개월 이내에 상품무역(서비스무역, 투자, 분쟁 해결) 협상을 진행하여 조속히 완결하도록 한다(ECFA 협정문 제3조 1항, 제4조 1항, 제5조 1항, 제10조 1항)."
- 이에 따라 2011년 6월 이전에 양안 간 본협상이 시작될 예정임.

■ 조기수확 프로그램(EHP)의 적극적 활용

- ECFA의 가시적인 효과를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 주요 공산품 및 서비스 분야에 대한 EHP(Early Harvest Program)를 체결함.
- 중국은 ASEAN, 파키스탄과의 FTA에서는 EHP를 활용한 바 있으나 농산물에 한정되거나(ASEAN) 교역액이 작아(파키스탄) 경제적 효과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됨.
 - ※ 중국은 동아시아 통합에서 일본에 뒤쳐진 ASEAN에서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2002년 11월 기본협정을 체결하며 일부 농산품에 대한 EHP를 포함시킨 바 있음(HS 01~08단위 500여 개 품목에 대해 2004년 1월 1일부터 무관세 실시).
 - ※ 중·파키스탄 FTA를 체결하면서 공산품을 포함한 EHP 협정을 2005년 4월 먼저 체결하고, 2006년 11월에 중·파키스탄 상품 FTA를 체결하였음(769개 품목에 대해 3년에 걸쳐 무관세, 1,671 품목에 대해 관세우대 실시).
- 중·대만 ECFA에서는 양국 간의 주요 교역 대상이 되는 공산품들과 일부 서비스 분야를 EHP에 포함시킴.

■ 짧은 협상 기간

2) 중·ASEAN FTA의 경우 2002년 11월 기본협정 체결 후 2009년 8월까지 약 8년에 걸쳐 별도의 협상을 통해 상품, 서비스 및 투자 협정을 순차적으로 체결함.

- 2009년 12월 제4차 양안회담에서 ECFA의 협상을 시행하는 데 합의한 후 6개월 만에 체결하여 이례적으로 짧은 협상으로 기본협정을 마무리함.
- 2010년 1월, 3월, 6월에 3차에 걸친 실무협상을 마친 후, 6월 29일 제5차 양안회담에서 ECFA 협정문에 전격 서명함.

나. 협정문의 구성

■ ECFA 협정문은 서언과 5개 장, 16개 조, 5개 부속서로 구성됨.

- 1장 총칙에 이어 2장에서는 무역 및 투자 자유화, 3장에서는 경제협력 등 향후 확대 FTA 협상에서 다루게 될 기본 의제를 명시하였으며, 4장 및 부속서에서는 EHP 관련 내용을 서술함.
- 기본협정에서 명시한 향후 협상 의제에는 각국 간의 FTA 협상에서 다루지는 대부분의 의제들이 망라되어 있어 향후 매우 포괄적인 FTA 협상을 진행하게 될 전망이다.

표 2. 중 · 대만 ECFA 협정문의 구성 내용

		세부 사항
서언		ECFA를 통한 경제 관계 제도화의 장기 전망과 기본 원칙
1장	총칙	목표, 협력 조치
2장	무역 및 투자	상품무역: 관세양허, 원산지 규정, 비관세조치(TBT, SPS 등), 무역 규제 조치 등 포함
		서비스무역: 무역 제한 조치 축소, 자유화 범위 확대, 협력 증진 등
		투자: 투자보장 기제 구축, 투명성 제도, 투자 제한 축소, 투자 원활화
3장	경제협력	지적재산권 보호 및 협력, 금융 협력, 세관업무 협력, 전자상거래 협력, 산업 협력, 중소기업 협력 등
4장	조기자유화 (EHP)	상품무역 조기자유화, 서비스무역 조기자유화
5장	기타	분쟁해결, 집행기구, 수정, 발효 및 종결 조항 등
부속서 1		상품무역 EHP 리스트와 관세율
부속서 2		상품무역 EHP 임시 원산지 규정
부속서 3		상품무역 EHP 적용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
부속서 4		서비스무역 EHP 개방 양허
부속서 5		서비스무역 EHP의 서비스 공급자 정의

자료: ECFA 협정문.

- 한편 기본협정과는 별도로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별도의 협의를 체결함(해협양안지식재산권보호협력협약의 《海峡两岸知识产权保护合作协议》).

다. 상품 EHP 주요 내용

■ 상품 EHP 리스트에는 중국 539개, 대만 267개의 품목이 포함됨.

- 중국의 자유화 품목은 농산물(18개), 기계(107개), 석유화학(88개), 자동차부품(50개), 방직(136개), 전자, 경공업, 금속, 의료계측기 및 의료제품 등이며 기계 관련 품목이 금액 및 항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대만의 자유화 품목은 석유화학(42개), 기계(69개), 방직(22개) 및 기타 제품 등이 포함됨.

표 3. 중 · 대만 ECFA 조기자유화 품목

구분	중국의 대만 자유화 품목	대만의 대중국 자유화 품목
상품 EHP 관세인하 품목	539개 품목: 농산물(18), 기계(107), 석유화학(88), 방직(136), 자동차부품(50), 기타(140)	267개 품목: 석유화학(42), 기계(69), 방직(22), 자동차부품(17), 기타(117)

자료: ECFA 협정문 및 부속서.

- 중국이 대만에 개방한 539개 품목은 2009년 기준 대만의 대중국 수출의 16.1%, 137.5억 달러를 차지함.

■ 현행 수입세율을 기준으로 3단계로 분류하여, EHP 발효 후 2년 동안(2011년 발효 시 2013년 1월 1일까지) 3단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함.

표 4. 중국과 대만의 EHP 관세 삭감 일정

	2009년 수입세율 (X%)	품목 수	협정세율		
			EHP 발효 1년	EHP 발효 2년	EHP 발효 3년
중국	0 < X ≤ 5	72	0		
	5 < X ≤ 15	437	5	0	
	X > 15	30	10	5	0
대만	0 < X ≤ 2.5	67	0		
	2.5 < X ≤ 7.5	186	2.5	0	
	X > 7.5	14	5	2.5	0

자료: EHP 협정문 등에서 계산함.

■ EHP와 관련한 원산지 규정과 세이프가드 조치 별도로 마련함.

- 부속서 2는 EHP를 위한 임시적인 원산지 규정이며, 부속서 3은 세이프가드 조치임.

- EHP를 통해 수입이 급증하여 시장에 피해가 초래되면 피해액에 한하여 1년 간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할 수 있도록 함.
- ※ “조기자유화 프로그램으로 인해 특정 수입품의 수량이 절대적으로 증가하거나 혹은 그 생산량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여 동종 상품 혹은 직접 경쟁 제품에 엄중한 손해나 손실 위협을 조성한 경우, 수입 측은 상대측에 협상을 요구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조사 결과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게 되면 관련 상품의 세율은 조치 당시의 MFN 관세율을 적용한다. 세이프가드 조치 기한은 최소한으로 하도록 하며 수입 측 산업에 피해를 입은 범위 내에서 최장 1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ECFA 협정문 부속서 3 제1, 2조).”

라. 서비스 분야 EHP

■ 중국 11개, 대만 9개 분야에 대한 조기 개방³⁾

- 중국은 회계·은행·보험·전문 설계·병원 서비스 등 11개 부문에서, 대만은 연구개발·유통·은행 등 9개 부문을 개방함.

표 5. 중·대만 ECFA 서비스 조기자유화 부문

구분	중국의 對대만 개방 부문	대만의 對중국 개방 부문
서비스 EHP 개방 부문	회계, 컴퓨터 서비스, 연구개발, 회의, 전문 설계, 시청각, 병원, 항공기 수리, 은행, 보험, 증권 등 11개	연구개발, 회의, 전시, 특제품 설계, 영화, 스포츠 레저, 유통, 항공 컴퓨터 예약 시스템 서비스, 은행 등 9개

자료: ECFA 협정문 및 부속서.

■ 중·대만 ECFA EHP와 중·홍콩 CEPA 서비스 양허안 비교

- ECFA EHP 서비스에서 개방한 부문의 개수는 11개로 현재까지 중국이 가장 많은 서비스 부문을 개방한 중·홍콩 CEPA 44개의 1/4 수준임.
- 개방 확대된 11개 분야의 경우 대부분 해당 분야 CEPA VIII⁴⁾

과 상응하는 수준의 개방을 양허하였고, 은행업 등 일부 부문에서는 CEPA보다도 일부 진전된 개방을 기재함.

- 이는 향후 ECFA 서비스 본협상이 전개될 때 추가적으로 개방할 서비스 부문들에서, 기체결 FTA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개방을 실시한 CEPA 수준이나 혹은 이보다 더 진전된 개방도 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분석됨.

■ 인력 이동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음.

- EHP 서비스 양허안에는 인력 이동(Mode 4) 관련 내용은 다뤄지지 않았는데, 이는 대만이 견지하고 있는 ‘중국 노동력의 대만 진입을 허용하지 않는다(不开放大陆劳工来台).’라는 원칙을 중국 측에서 수용한 결과임.

■ 금융업 개방 내용

- 중국은 금융업에 대해 WTO 가입 이후 중·홍콩 CEPA를 제외하면 FTA를 통해 진전된 개방을 한 적이 없으나, ECFA에서 CEPA 수준의 금융업의 개방 확대를 EHP에 포함시킴.

1) 은행업 진입 조건 완화

- 중·홍콩 CEPA와 동일한 양허 내용:

- 독자은행 설립요건에서 대표처(사무소) 설립요건이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완화됨.
- 이익 요건 산정 시 중국 내 모든 지점의 이익을 합산하도록 허용함.
- 중국법률에 따른 중소기업 대상 전문 금융기관 설립이 가능해짐.

- 중·홍콩 CEPA보다 진전된 양허 내용:

- 인민폐 업무에서 중국 내 대만 기업 대상의 경우를 별도로 기재하고 영업 경력 요건은 CEPA의 2년보다 짧은 1년으로 단축시킴.
- 중서부 및 동북부 지역 은행 개설 시 특별절차(綠色通道)를 마련함.

3) 양허안의 기재 방식은 GATS 포지티브 방식(개방할 서비스 부문을 기재하고, 이에 대한 제한사항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개방하지 않는 분야만 기재하는 네거티브 방식보다 개방 범위가 적음)을 채용하였으나, 시장접근(MA) 제한사항만 기재하고 내국민대우(NT) 제한사항은 기재하지 않았음. 중·홍콩 CEPA에서도 GATS 포지티브 방식을 채용하였으나 NT 사항은 미기재함. 이처럼 MA는 기재하고 NT를 생략한 것은 여타 WTO 회원국들과는 다른 양안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해 주는 것으로 파악됨.

4) 중·홍콩 CEPA는 2003년 1차 협상 이후 매년 보충협상을 통해 점진적으로 개방 수준을 높여 왔으며, 기체결 FTA 중 가장 광범위하고 높은 수준의 서비스 개방을 이루었음. 2010년 5월 29일에는 8차 협상(CEPA VIII)이 체결됨.

표 6. 중·대만 ECFA EHP 은행업 개방 내용

개방 내용	WTO 가입 양허	CEPA 양허	ECFA EHP 양허
독자은행 및 지점 설립 신청 요건	대표처 설립 3년 이상	대표처 설립 1년 이상(CEPA VIII)	대표처 설립 1년 이상
인민폐 업무 신청 요건	중국 내 영업 3년 이상, 신청 전 2년 연속 이익	중국 내 영업 2년 이상, 신청 전 1년 이상 이익(CEPA VIII)	중국 내 영업 2년 이상, 신청 전 1년 이상 이익
중국 내 대만 기업 대상 인민폐 업무	-	-	개설 1년, 1년 이상 이익
중소기업 대상 전문 금융기관 설립	-	홍콩 자본에 의해 설립된 중국 내 영업 은행은 중국 법률에 따라 설립 가능 (CEPA VIII)	중국에서 영업 중인 대만 은행은 중국법률에 따라 설립 가능
이익 요건 산정 방식	업무를 신청한 해당 지점의 이익으로 산정	중국 내 모든 지점의 이익을 합산(CEPA I)	중국 내 모든 지점의 이익을 합산
대만은행 개설을 위한 녹색통로(綠色通道)	-	-	중서부와 동북부 지역에 대만 은행 개설 시 특별절차

주: () 안은 관련 내용이 CEPA 및 차 협정에서 양허되었는지를 표시함.
자료: 각 협정문에서 정리함.

표 7. 중·대만 ECFA EHP 보험 및 증권업 개방 내용

양허 분야	WTO 양허안	홍콩 CEPA	ECFA EHP 양허안
7. 금융 서비스 A. 보험	시장 진입 조건 - 총자산 50억 US\$ 이상 - 30년 이상 영업 경력 - 2년 이상 중국 내 대표처 설립	시장 진입 조건 충족을 위한 재조직 (re-grouping) 및 전략적 합병 허용 (CEPA I)	CEPA와 동일
증권	-	홍콩 영주권자는 중국 증권 및 선물업 자격 획득을 위한 교육 이수 후 시험 합격으로 자격 취득(전문지식 시험은 면제)	- 대만 금융기구의 적격해외기관투자자(Q FII) 자격 신청 허용 - 대만증권거래소와 선물거래소를 적격국내기관투자자(QDII)가 투자 가능한 금융파생상품교역소 리스트에 조속히 포함 - 대만 증권업 종사자의 중국 종사 자격 및 영업 자격 취득 절차 간소화

자료: 각 협정문에서 정리.

2) 보험 및 증권업 확대 개방

- 보험 서비스에 대해서는 중국 내 외자 보험회사의 시장 진입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대만 보험회사의 재조직(re-grouping) 및 전략적 합병을 허용함(즉, 그룹을 이룬 기업의 총자산 50억 달러, 그룹 내 1개 기업 이상의 30년 이상 영업 경력과 중국 내 2년 이상 대표처 설립으로 진입 가능).
- 증권 서비스에서는 대만 금융기관의 적격해외기관투자자(QFII) 신청을 허용하고, 대만 증권거래소 및 선물거래소를 적격국내기관투자자(QDII)⁵⁾가 투자할 수 있는 금융파생상품 교역소 리스트에 조속히 포함시키도록 하였으며, 대만 증권전문가의 중국 활동을 위한 자격 취득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합의함.

5) 적격해외기관투자자(QFII: 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는 여건에 부합되는 해외 기관 투자자가 비준을 받아 외화자금을 송금한 후 인민폐로 바꿔 전용 계좌를 통해 중국 증권시장에 투자하고 그 원금, 자본 이득, 이익 배당금 등은 비준을 받은 후 다시 외환으로 바꾸어 송출하도록 하는 제도로 2003년 6월 첫 QFII가 중국에 진입하였음. 적격국내기관투자자제도(QDII: Qualified Domestic Institutional Investor)는 국내 기관 투자자가 감독 관리부서의 비준을 거쳐 일정한 한도 내에 전문 구좌를 통해 해외 증권시장에 투자하는 제도로 상업은행의 고객 대리 해외 재테크 업무, 보험자금의 해외 운용업무 및 펀드 관리회사 등 해외 증권투자 업무임. 중국에서는 2006년 4월부터 시행됨.

■ 전문 설계 서비스(CPC 87907) 최초로 개방함.

- 전문 설계 서비스에 대해 최초로 양허⁶⁾하였는데 국경 간 공급(Mode 1), 해외 소비(Mode 2)⁷⁾를 개방하고 상업적 주재(Mode 3)에 대해 합자, 합작 및 독자기업 설립을 허용함.

■ 병원 서비스(CPC 9311)를 확대 개방함.

- 상업적 주재(Mode 3)에서 합자 및 합작병원 설립을 개방하고, 상하이, 장수, 푸젠, 광둥, 허난성에 대해서는 독자병원 설립을 허용함.
- 독자병원 설립은 최근 체결된 CEPA VIII에서 처음 허용함.
- 기체결 FTA 중 최초로 이 부문을 개방한 중·싱가포르 FTA에서는 합자병원 설립(외국 지분 70% 상한)을 허용한 바 있으나, 중국 측 요구에 따른 수량 제한과 대다수 중국인 의사 채용이라는 조건부에 양허였음.

6) 기체결 FTA에서 개방된 적은 없고, 2010년 5월 29일 체결된 중·홍콩 CEPA 8에서 개방됨.

7) 서비스 협상에서 구분하는 서비스 교역 형태로서 국경 간 공급(Mode 1), 해외 소비(Mode 2), 상업적 주재(Mode 3), 자연인의 이동(Mode 4) 네 가지로 나뉨.

표 8. 중·대만 ECFA EHP 병원 서비스 개방 양허 비교

	CEPA 양허	중·싱가포르 FTA	ECFA EHP
병원 서비스 (CPC 9311)	- 상하이, 충칭, 광둥, 푸젠, 허난성에 독자병원 설립 허용 (중국 외상투자병원 설립 규정에 따름) - 상기 지역의 JV병원 설립 시 지분 제한 철폐 (CEPA VIII)	- Mode 1 미개방 - Mode 2 개방 - Mode 3: 싱가포르 지분 상한 70%의 JV 허용(단, 총수량 제한은 중국 측의 수요에 따름. 의사와 의료진의 대다수는 중국인이어야 함.)	- Mode 1, 2 미개방⁸⁾ - 합자, 합작병원 설립 허용 - 상하이, 장수, 푸젠, 광둥, 허난성에 독자병원 설립 허용

자료: 각 협정문에서 정리함.

■ 비즈니스 서비스, 시청각 및 운송 서비스를 개방함.

- 회계 서비스에 있어서 중국 내 회계 서비스업 종사를 위해 발행되는 임시회계비즈니스 허가증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연장함.
- 컴퓨터 관련 서비스와 컨벤션 및 전시 서비스의 경우, GATS 양허에서 조인트벤처(JV)만 허용하던 것을 독자기업으로 확대 개방함.
- 자연과학과 엔지니어링 연구개발(R&D) 서비스의 경우 GATS에서 미기재한 부문으로, 중·페루 FTA에서 처음 개방하였으며, 홍콩 CEPA에 이어 대만과의 ECFA에서도 개방함.
- 비디오, 음악 레코딩 유통 분야에서는 WTO 양허 이외에 추가 양허로 대만 저작권이 50% 이상인 영화 수입 시 스크린쿼터에서 제외⁹⁾시키는 개방 조건을 기재함.
- 또한 항공기 유지보수 서비스(CPC 8868 중 일부)에 대해 독자기업의 설립을 허용함.

8) 중·대만 ECFA EHP에서는 병원 서비스에 대해 국경 간 공급 (Mode 1)과 해외 소비 (Mode 2)는 개방하지 않았음(이에 비교해 중·싱가포르 FTA에서는 Mode 2를 개방). 즉, 원격진료나 통신을 통한 의료자문 등의 국경 간 서비스 공급이나 개인이 직접 해외로 가서 수술을 받는 등의 해외 의료관광 등은 개방하지 않음.

9) 현재 중국은 WTO 가입 양허에 따라 연간 외화 수입 편수를 20편으로 제한하고 있음.

표 9. ECFA 서비스 EHP 중국 양허안의 기존 양허와의 비교

양허 분야	WTO 양허안	홍콩 CEPA 양허안	ECFA EHP 양허안
1. 비즈니스 서비스, 회계 서비스	- 미기재 (관련 국내법에 따르며 6개월)	- 임시회계비즈니스 허가증 유효기간 5년	- 임시회계비즈니스 허가증 유효기간 1년
B. 컴퓨터 관련 서비스 b. 소프트웨어 실행 서비스 c. 데이터 프로세싱	조인트벤처(JV) 형태만 가능(외국 다수 지분 허용)	- 독자기업 허용	- 독자기업 허용
C. 연구개발, 자연과학, 엔지니어링	- 미양허	- 독자기업 허용	- 독자기업 허용
F. 기타 비즈니스 서비스 (s) 컨벤션, 전시 서비스	JV만 가능 (외국 다수 지분 허용)	- 독자기업 허용	- 독자기업 허용
2. 통신 서비스 - 비디오, 음악 레코딩 유통	JV 설립 허용(영화 유통 제외). 중국 심의 권한 유보 - 추가 양허: 연간 외화 수입 20편 허용	- 독자기업 설립허용	- WTO 양허와 동일 - 추가 양허: 대만 저작권이 50% 이상인 중국어 영화 수입 시, 주관 부문 심의 후 스크린쿼터 대상에서 제외(단, 영화 제작 주요 제작진 중 50% 이상이 대만인일 것)
11. 운송 서비스 C. 항공운송 (d) 항공기 수리 및 유지보수 (CPC 8868)	JV 허용(단, 중국 측의 지배적 지분 유지, 경제 수요 심사 (ENT 필요))	- 항공기 유지보수 서비스에 대한 합자, 합작 및 독자기업 설립 허용 (CEPA VIII)	CEPA와 동일 ※단, 서비스 제공자는 반드시 법인이거나 복수 공급자 연합일 것

자료: 각 협정문.

■ 그러나 협정문상에 서비스 산업 개방과 관련한 유보 조항을 명시함.

- ※ “만약 서비스 조기자유화 프로그램을 실시함에 있어 일방의 서비스 부문에 실질적인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면, 피해를 받은 일방은 상대방에게 협의를 요구하고 해결방안을 찾으려 한다(제4조 2항의 4).”
- CEPA에서의 서비스 개방은 8년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온 데 반해, ECFA 서비스 EHP에서의 서비스 개방은 단번에 동일한 수준의 개방을 약속한 만큼, 안전장치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임.
- 여전히 중국은 서비스 부문 개방에 있어서 매우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음.

마. 중국과 대만의 ECFA 체결 동기

■ 중국은 ECFA 체결을 통해 대만에 대한 정치·경제적 영향력

을 확대하고자 함.

- 홍콩, 마카오와의 CEPA, 싱가포르와의 FTA 체결 등 중화 경제권 강화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파악됨.
- 이러한 전략적 고려 속에서 중국은 EHP에 대만의 대중 주요 수출품을 다수 포함시킴.
- 또한 대만의 취약 산업과 농산품의 개방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중국 인력의 대만 이동을 협정에서 제외시킴.
- ※ “양안의 경제발전 수요 및 산업의 상호보완성을 고려하여 조기수확 리스트에 포함시키고, 대만의 취약 산업, 농산품 개방 및 중국 인력 이동에 대한 부분을 협정에서 제외시켜 중국 측의 최대한의 성의와 선의를 표현하였다(6.29 중국 상무부판공실 발표 담화).”

■ 대만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세계 경기침체 속에서 경기회복과 정치적 안정을 위한 돌파구로서 중국과의 ECFA를 활용하고자 함.

- 미국의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가 6월 28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양안 ECFA 체결은 2020년까지 타이완 GDP를 4.5% 상승시킬 것이라고 분석함.¹⁰⁾
- 대만 중화경제연구원의 연구 결과 ECFA의 체결로 대만 경제성장률이 1.65~1.72%포인트 증가하고, 약 35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평가함.
- 또한 인프라·석유화학·철강 등 산업에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대만 외국 자본의 투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¹¹⁾
- 한편 대만은 ECFA 체결을 계기로 세계 각국과 FTA를 체결하여 국제적 고립상태를 벗어나기를 희망하고 있음.
- ※ 현재 대만의 FTA 체결 국가는 중남미의 과테말라, 파나마,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등 5개 국가이며, 해당 5개 국가가 대만 전체 무역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29%에 불과함.

3. ECFA가 한국의 對중국 수출에 미칠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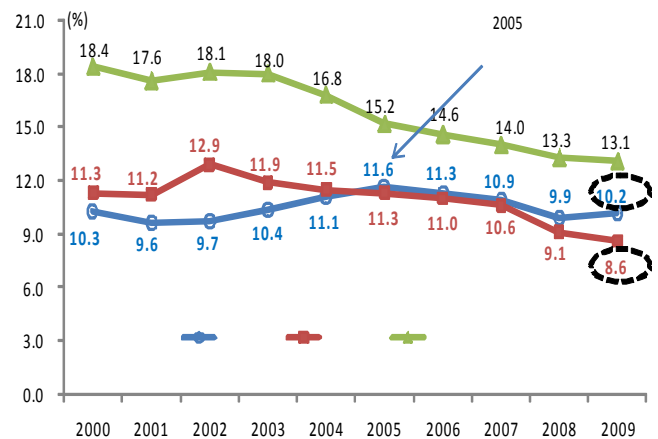
가. 중국 수입시장에서 한·대만 경쟁 현황

■ 한국과 대만의 수입시장 점유율 각각 2, 3위

- 한국과 대만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2009년 현재 각각 10.2%와 8.6%로 2005년 이후 한국이 대만을 소폭 앞서고 있음.

※ 2009년 기준 주요국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1위 일본(13.1%), 2위 한국(10.2%), 3위 대만(8.6%), 4위 미국(7.7%), 5위 독일(5.6%)

그림 1. 한국-대만-일본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추이



자료: 중국해관 통계.

■ 한국과 대만의 對중국 수출의 상위 100개 품목 중 81개가 상호 중복됨.

- 중국 무역 통계의 최하위 단계인 HS 8단위 기준 한국과 대만의 대중 수출 상위 100개 품목에서 상호 중복되는 품목이 81개이며, 이들 품목은 한국의 對중국 전체 수출액¹²⁾의 7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한·대만 간 수출 구조가 유사함.
- 대만의 경우도 한국과 중복되는 81개 품목의 對중국 수출 비중이 70.2%로 한국과 비슷한 상황임.

나. EHP 대상 품목 및 관세율의 영향

■ 조기자유화 539개 품목 중 우리나라의 對중국 수출과 중복되는 품목은 494개로서 2009년 기준 우리나라 對중국 수출액의 17.9%(182억 6,200만 달러)에 해당됨.¹³⁾

10) Daniel H. Rosen(2010. 6. 28), "Deepening China-Taiwan Relations through the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POLICY BRIEF 10-16,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11) 배승빈(2010. 4. 13), 「중·대만 ECFA의 협상 추이 및 시사점」, KIEP 지역경제포커스.

12) 중국해관 통계 기준으로 본 2009년 한국의 對중국 수출총액(중국의 對한국 수입)은 1,021억 2,500만 달러임.

■ 주요 품목으로 나누어 볼 때, 해당 품목군별 중국 시장 점유율은 대부분 한국의 평균 중국 시장 점유율(10.2%)을 상회함(표 9 참고).

- 특히, 석유제품, 철강, 동 제품, 석유화학, 섬유·방직·의류, 전기기기 및 부품 등의 경우 한국의 중국 시장 점유율(16.4~42.3%)이 높은 품목임.

표 9. 대만과 한국의 EHP 주요 품목 대중 수출 비중 비교

	주요 품목군	수출 비중(%)		품목별 시장 점유율(%)	
		대만	한국	대만	한국
	전 품목	100.0	100.0	8.6	10.2
1	석유화학(88개)	6.2	5.2	18.1(87개)	18.0(87개)
2	전기기기·부품(41개)	1.4	3.4	5.8(38개)	16.1(40개)
3	기계(100개)	1.2	1.2	5.0(95개)	6.1(91개)
4	섬유·방직·의류(133개)	2.2	1.4	21.0(132개)	16.4(129개)
5	철강(22개)	1.3	1.8	15.0(22개)	24.8(22개)
6	특수용도 차량 오토바이 부품(47개)	0.2	0.8	2.5(29개)	14.3(38개)
7	동과 그 제품(18개)	1.9	1.0	33.2(18개)	19.7(18개)
8	석유 제품(4개)	0.6	2.0	11.2(4개)	42.3(4개)
9	광학기기·부품(6개)	0.2	0.3	6.0(6개)	12.8(6개)
10	농산품(18개)	0.02	0.03	0.9(17개)	1.9(8개)

주: 1. 수출 비중은 각국의 전체 대중 수출에서 해당 품목군이 차지하는 비중임.
 2. 품목별 시장 점유율은 해당 품목군의 중국 전체 수입시장에서 각국의 품목군이 차지하는 비중, 즉 해당 품목군의 중국 시장 점유율을 의미함.
 3. () 안의 수치는 EHP 대상 품목 개수임.
 자료: 중국해관 통계.

■ EHP에 포함된 제품들에 대한 명목관세율은 2010년 현재 평균 9.5%에서 2013년 0%로 낮아짐.

- 관세인하율만큼 해당 대만 제품의 중국 시장 내 가격경쟁력이 개선됨을 의미하며, 관세인하율을 대만의 품목별 대중 수출액에 따라 가중평균하면 가격경쟁력 개선 효과는 7.1%임.
- 반면 동일 품목군에 대해 한국 제품에 적용되고 있는 중국 관세율의 가중평균 관세율은 7.9%임.
- 연도별 대만 제품에 대한 가중평균 관세율은 2011년 1월에 3.3%, 2012년 1월 0.001%로 낮아짐으로써 사실상 2012년 1월 1일까지 대부분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표 10 참고).

표 10. 대만 EHP 품목에 대한 중국의 연도별 관세율 (2011년 발효 시)

	2010.1.1	2011.1.1	2012.1.1	2013.1.1
단순평균	9.5	4.2	0.28	0.0
가중평균	7.1 (7.9)	3.3	0.001	0.0

주: () 안은 해당 품목에 대한 중국의 한국 상품에 대한 관세율 평균임.

다. 가공무역과 일반무역을 구별할 경우

■ 대만의 對중국 무역구조(가공무역 63.7%, 일반무역 23.3%)를 고려할 때 ECFA로 인한 관세인하 효과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의 수입에서 일반무역이 아닌 가공무역 및 기타로 분류되는 수입의 경우 관세유예의 대상이어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관세인하 또는 철폐 효과를 볼 수 없음.

※ 한국의 경우 가공무역 53.3%, 일반무역 33.7%(2009년 기준).

- 즉 중·대만 ECFA가 실제로 한국 제품의 對중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가공무역을 제외한 일반무역 부분에만 한정됨.

■ EHP에 영향을 받는 한국의 대중 수출 품목 494개 중(1826억 달러) 관세를 납부하는 일반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40.6%이며, 그 총액은 74.7억 달러(2009년 대중 수출의 7.3%에 해당)임.

- 즉 가공무역 부분을 제외할 경우, 중·대만 ECFA가 한국의 대중 수출 경쟁력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부분은 對중국 수출총액의 7.3%임.

라. 주요 산업 및 품목별 영향

1) 산업별 관세인하 효과

■ ECFA의 체결로 대만의 對중국 수출에서 관세인하 효과가 크게 나타날 품목은 일반무역 비중이 높은 품목이 될 것임.

■ 한국의 對중국 수출에서 EHP의 영향을 받는 494개 품목 중 일반무역액 기준 상위 30개 품목의 산업분포를 검토함.

13) 494개는 한국무역협회에서 제공하는 중국해관 수입통계(2009년 기준)를 천 달러 단위로 계산한 것임. 그 결과 해당 품목은 496개로 2개 품목의 오차가 있었음. 또한, 천 달러가 아닌 1달러 기준으로 중복 품목을 계산할 경우 505개 품목에 해당(183억 7,917만 달러)되며, 이는 우리나라 對중국 수출액의 18%를 차지함.

표 11. 중국의 EHP 대상 품목 수입(2009년 기준)

(단위: 개, 백만 달러)

업 종	품목 수	대세계	對한국			對대만		
			전체	일반 무역	가공 무역	전체	일반 무역	가공 무역
농산물	18	1,620	35	6	27	16	9	2
섬유/의류	133	8,766	1,436	138	1,276	1,843	218	1,584
석유화학제품	50	13,203	2,409	1,851	428	2,526	1,869	401
고무/플라스틱제품	52	17,971	3,100	1,360	1,628	2,993	900	1,942
철강/비철금속제품	68	14,934	3,317	1,472	1,674	3,008	509	2,209
기 계	106	25,685	1,676	950	274	1,226	623	177
전기전자	41	21,301	3,435	379	2,961	1,238	144	906
운송장비	47	5,712	817	791	27	142	69	66
기 타	24	6,211	2,153	523	90	841	163	268
합 계	539	115,402	18,379	7,470	8,385	13,833	4,504	7,554

자료: 중국해관 통계

- 30개 품목은 494개 품목 일반무역 총액 74.7억 달러 중 67.3%인 50.3억 달러(한국 對중 수출 총액의 4.9%에 해당)를 포괄함.
- 이들 품목의 산업분포를 보면 중 석유화학(12개), 철강(6개), 운송장비(4개) 등에 영향이 집중됨.
- 석유화학의 경우 총 12개 품목에서 평균 5.5%의 명목관세를 부담하고 있으며, 이 품목들은 한국의 對중 수출에서 2.7%를 차지(표 12 참고)하고 있음.

2) 주요 품목별 영향

■ 품목별로는 1) 중국의 관세율이 높고, 2) 일반무역액의 비중이 높으며, 3) 대만과 주로 경쟁하고 있는 품목에서 부정적 영향이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분석됨(표 13 참고).

- 석유화학 관련 품목들은 일반무역의 비중이 높고, 중국 시장에서 한국과 대만이 주요 수출국인 경우가 많아 품목별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나, 전반적인 관세율은 높지 않은 편임.

표 12. 일반무역 기준 수출 상위 30개 품목의 산업분포 (EHP에 포함되는 494개 중)

(단위: 백만 달러, %)

산업	해당 품목	평균 관세	일반 무역 해당액	비중*
석유 화학	유기화학, 석유제품, 합성수지, 플라스틱제품(12개)	5.5	2,728	2.7
철강	철과 비합금강, 스테인리스강(6개)	4.2	966	0.9
운송 장비	특수용도 차량부품(4개)	10.0	720	0.7
기계	기타 기계, 원동기 및 펌프(4개)	8.0	244	0.2
비철 금속	알루미늄제품, 기타 금속제품(2개)	7.0	222	0.2
전기 전자	기타 전자부품(1개)	7.0	85	0.1
광학 기기	시험계측기기(1개)	5.0	65	0.1

주: 비중은 한국의 對중 수출 총액에서 해당 품목이 차지하는 비율임.

자료: 중국해관 가공무역 통계.

- 철강제품의 경우 대부분이 일반무역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한국과 대만의 시장 점유율이 모두 높은 편이지만, 같은 HS 코드의 철강제품이라도 양국 제품의 품질에 차이가 있어 경쟁이 심각하지 않다고 평가됨.

※ 대만은 범용 철강제품을 주로 수출하는 반면, 한국은 차량용의 고급 제품을 주로 수출함.

- 운송장비(HS 87)에 속한 4개 트랙터 및 특수용도 차량 부품 품 및 부품은 대부분 일반무역(91.9%~100% 내수)이고, 명목관세율이 높아(10%) 큰 영향이 예상되나, 대만의 중국시장 점유율이 높지 않고, 관련 조립업체와의 관계가 중요한 분야임에 유의해야 함.

- 단, [표 13]은 무역 통계를 분석한 결과로서 같은 HS 8단위 품목이라 하더라도 산업별 품목의 수급 상황, 생산 공정별 특수성 그리고 기업마다 수요처와의 무역거래 형태가 상이하기 때문에 기업 단위의 평가를 해야 정확한 실제 영향 파악이 가능할 것임.

표 13. EHP 해당 품목 중 대중 일반무역 수출 상위 30개 품목

(단위 : 백만 달러, %)

		HS 8단위	명목 관세	일반무역	한국 점유율	대만 점유율	대중 수출	일반 무역 비율	관세 철폐 연도
	30개 품목의 합		6.3	5,028					
석유 화학	파라크실렌	29024300	2.0	854	24.4	12.6	854	100.0	2011
	프로필렌	29012200	2.0	446	35.3	31.4	482	92.6	2011
	윤활기유	27101993	6.0	292	24.8	3.5	333	87.7	2012
	에틸렌-프로필렌 공중합체	39023010	6.5	292	38.5	9.8	349	83.8	2012
	폴리카보네이트	39074000	6.5	243	19.2	12.8	534	45.5	2012
	제트연료유	27101911	9.0	185	52.1	14.0	1,678	11.0	2012
	1,3-부타디엔 및 이소프렌	29012400	2.0	77	45.6	22.1	113	68.3	2011
	에폭시수지	39073000	6.5	72	16.9	21.9	140	51.3	2012
	실리콘수지	39100000	6.5	71	12.4	6.7	91	77.7	2012
	오르토 - 크실렌	29024100	2.0	73	18.8	26.2	106	69.2	2011
	기타 플라스틱제품	39269090	10.0	65	15.5	7.4	221	29.4	2012
	기타 플라스틱제품	39199090	6.5	58	17.7	15.3	194	29.8	2012
철강	철 · 비합금강 평판압연제품	72091790	3.0	417	41.5	9.3	498	83.8	2011
	기타 아연 도금 또는 도포 제품	72104900	4.0	173	20.2	22.8	191	90.7	2011
	스테인리스강	72191329	4.0	139	5.2	5.8	157	88.4	2011
	철 · 비합금강 평판압연제품	72091690	6.0	83	40.7	23.0	96	86.2	2012
	철 · 비합금강 평판압연제품	72083990	3.0	79	14.1	16.1	155	50.9	2011
	철 · 비합금강 평판압연제품	72082790	5.0	74	35.4	11.7	76	97.3	2011
운송 장비	차체 기타 부품	87082990	10.0	329	17.3	1.8	336	97.9	2012
	자동차용 기어박스 및 부품	87084099	10.0	176	16.5	0.1	182	96.9	2012
	자동차용 부분품	87089999	10.0	120	8.1	0.6	131	91.9	2012
	기타 차체 덮개	87082959	10.0	95	63.8	2.5	95	100.0	2012
기계	유압의 밸브	84812010	5.0	73	13.2	2.2	74	99.0	2011
	전동용 부분품	84839000	8.0	59	8.1	4.3	70	84.9	2012
	원동기 및 실린더	84122100	12.0	56	10.2	1.1	56	100.0	2012
	기타 밸브	84818010	7.0	55	3.5	2.0	93	58.9	2012
비철 금속	알루미늄 합금	76061220	6.0	115	31.1	13.4	128	89.6	2012
	프레스 · 스탬핑 편칭용 공구	82073000	8.0	107	24.3	6.5	156	68.4	2012
전기 전자	전기회로 부분품	85389000	7.0	85	9.9	7.7	323	26.3	2012
광학 기기	기타 측량 · 검사기기	90318090	5.0	65	10.8	3.5	165	39.5	2011

자료: 중국해관 가공무역 통계.

주: 1. HS 39199090(기타 플라스틱제 접착성 판, 시트, 필름 등 재료), 72091790(두께 0.5mm 이상 1mm 이하 철비합금강 평판압연제품), 72191329(두께 3mm 이상 4.75mm 미만의 스테인리스강), 72091690(두께 1mm 초과 3mm 미만의 철비합금강 평판압연제품), 72083990(두께 1.5mm 이상 3mm 미만의 철비합금강 평판압연제품), 72082790(두께 1.5mm 이상 3mm 미만의 철비합금강 평판압연제품), 76061220(두께 0.2mm 초과 0.28mm 미만의 직사각형의 알루미늄 합금), 85389000(전기회로 개폐보호접속용 부분품).

2. 제트연료유(HS 27011911), 윤활기유(HS 27101993) 등은 석유제품이나 중국의 산업 분류에 따라 편의상 석유화학제품에 포함시킴.

4. 시사점

가. 세분화된 품목별 분석이 필요

- 산업별 영향으로 접근하기보다는 품목별로 중국의 관세율, 일반무역의 비중, 대만과의 경쟁 상황 등을 고려한 품목별 접근이 필요함.
- 특히 전기 및 기계 산업 분야의 품목들은 품목별 수출액이 작으나 중소기업이 많은 해당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품목 및 기업 단위의 현황 파악이 필요함.
- 산업별로는 EHP 해당 품목이 많고, 수출 규모도 크며, 대만과의 경쟁이 치열한 석유화학 산업에서 가장 광범한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PVC, PE, ABS, TPA 등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은 최종 리스트에서 제외됨.

나. 기본협정 이후의 본협상 전개 양상에 유의

- 금번 체결된 기본협정은 발효 시점에서 6개월 내에(2011년 상반기 예상)에 상품, 서비스, 투자, 경제협력 분야의 본협상(사실상의 FTA)을 명시하고 있음.
- 즉 중·대만 협력 강화는 이번엔 체결된 ECFA에서 멈추지 않을 것이며 향후 광범한 분야에서 협력의 강화가 예상됨. 따라서 이에 대한 지속적인 동향 파악과 영향평가가 필요함.

다. 대중 투자 동향과 관련한 유의

- ECFA를 계기로 중·대만 관계 강화
- 최근 한국의 대중 투자는 격감한 반면, 양안(兩岸)관계 개선이 본격화된 2009년 대만의 대중 투자가 급증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함.
- ※ 한국의 대중 투자는 2007년 52.5억 달러에서, 2008년 37.5억 달러, 2009년 20.8억 달러로 급감하는 추세임.
- ※ 대만의 대중 투자는 2007년 17.7억 달러, 2008년 19.0억 달러에서 2009년 65.6억 달러로 급증함.
- 대중 투자가 대중 수출의 상당 부분을 이끌고 있음을 고려할 때, 향후 중국 시장에서 대만의 위상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 최근 한국의 대중 투자에서 서비스 산업 비중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은행·증권·병원 서비스 등 11개 서비스 분야를 포함한 서비스 분야에서 대만이 EHP를 통해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게 됨.

- 한국의 대중 투자 중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2004년 8.7% 수준에서 2007년 27.3%, 2008년 34.4%, 2009년 20.2%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서 대만의 서비스 분야 선점의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됨.

라. 한·중 FTA에 대한 합의

- 중·대만 ECFA는 '한·중 FTA 추진의 필요성' 및 '한·중 FTA 추진의 방식'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함.
- 이번 협정을 통해 대만은 주요 제조업국 중 유일하게 중국의 내수시장에 대한 특혜적인 접근 조건을 확보함.
- 중국 내수시장에 대한 접근 조건을 둘러싼 각국의 경쟁이라는 장기 전략적 관점에서 한·중 FTA 추진 필요성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함.
- 중국과 대만은 '기본협정', 'EHP' 등 형태를 매우 실용적이고 창의적으로 활용하여, 1) 단기간 협상(6개월), 2) 경제적 효과 실현의 조기화(2011년부터 예정), 3) 향후 협상의 추진동력 확보(대만 내 반대 최소화) 등을 달성하였음에 유의해야 함.
- 통상적인 협상 전략으로 한·중 FTA에 임하여 협상 및 비준이 장기화될 경우, 2011년부터 시작되는 중·대만 ECFA에 대한 대응에는 한계가 될 수 있음.

- 한·중 FTA에서도 '기본협정' 및 'EHP'의 과감한 활용을 통해 경제적 효과의 조기 극대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음.
- 중·대만 형태의 '선별적' EHP 형태와 아울러, 비민감 품목에 대해 양측이 일괄 선제 개방하는 전면적 EHP 도입도 검토할 수 있음.
- ※ 원자바오 총리 방한 시(5.28) 한·중 FTA는 "쉬운 것부터 추진하는 게 좋다."라는 언급과도 부합됨.

- 2011년 6월 이전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대만 FTA 협상은 중국이 제조업 강국과 시도하는 사실상 첫 번째 FTA 협상이며 한·중 FTA와도 유사한 부분이 많으므로 중국의 입장과 태도를 관찰하여 향후 진행될 한·중 FTA 논의에 참고할 필요가 있음. KIEP